

복무

1 복무일반

가. 관련 법규

- 1) 『국가공무원법』(법률 제19341호, 시행 2023. 10. 12.)
- 2) 『교육공무원법』(법률 제20377호, 시행 2024. 9. 20.)
- 3) 『국가공무원복무규정』(대통령령 제35258호, 2025. 2. 11.)
- 4) 『국가공무원 복무·징계 관련 예규』(인사혁신처예규 제193호(2025. 2. 11.))
- 5) 『국가공무원 복무규칙』(총리령 제2009호, 2025. 1. 16.)
- 6) 『교원휴가에 관한 예규』(교육부 예규 제83호, 시행 2023. 11. 12.)
- 7) 『사립학교법』 제55조: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·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나. 교직원의 임무(초·중등교육법 제20조)

- 1)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, 민원처리를 책임지며, 소속 교직원을 지도·감독하고, 학생을 교육한다.
(2023. 9. 27.)
- 2)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,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 다만,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(수석교사를 포함한다)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- 3)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·연구 활동을 지원하며, 학생을 교육한다.
- 4)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.
- 5)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.

다. 교육공무원의 복무상 의무(국가공무원법)

- 1) 직무상 의무
 - 가) 성실의무(제56조):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 - 나) 복종의 의무(제57조):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.

■ 인사혁신처 징계업무편람

【사례】 “소속상관”이라 함은 그 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휘·감독권을 가진 자를 말하므로 기관의 장 뿐만 아니라 보조기관인 상관과 기타 지휘·감독권을 가지는 상급자를 포함함.